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역사회·문화·관광에 관한 전통시장 공동사업 지원〉

■ 권칠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971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 소 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지역사회 · 문화 · 관광에 관한 전통시장 공동사업 지원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권칠승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2. 7.

3. 회부연월일 : 2025. 2.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역 주민과 예술가들이 함께 중고품과 예술 작품을 거래하는 지역사회·문화·관광 관련 참여형 시장이 개최·운영되고 있음. 이는 시장에 특징적인 볼거리를 제공하고, 많은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과 직접 마주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참여형 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시장 상인이 전통시장 등에서 개최하는 중고품 매매·교환 또는 예술품 전시·판매 등 지역사회, 문화, 관광에 관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여형 시장 및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6조제5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지역사회·문화·관광에 관한 전통시장 공동사업 지원

개정안은 전통시장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사회·문화·관광에 관한 공동사업을 상인이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26조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공동사업의 활성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이 거래비용의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공동사업의 활성화) ----- ----- ----- ----- ----- -----.
1. 상품, 상표, 포장용기의 개발 및 디자인의 개선 등에 관한 사업	1. (현행과 같음)
2. 구매, 물류, 배송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의 설치에 관한 사업	2. (현행과 같음)
3. 공동판매장의 설치 등 판로 지원에 관한 사업	3. (현행과 같음)
4. 광고, 옥외광고물의 제작·표시·설치 등 시장등의 홍보에 관한 사업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시장등에서 개최하는 중고품 매매·교환 또는 예술품 전시·판매 등 지역사회, 문화, 관광에 관한 사업 6. (현행 제5호와 같음)
--	--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의 상인이 거래비용의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상품, 상표, 포장용기의 개발 및 디자인의 개선 등에 관한 사업’ 등을 포함한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관광형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공공시설과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량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의2. “문화관광형시장”이란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 등을 연계하여 상품·용역의 거래뿐만 아니라 그 고유의 특성을 즐기고 관광할 수 있는 곳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시장·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를 말한다.

제13조(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육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내용과 육성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관광형시장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공시설과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량
2. 기념품 및 지역특산품의 개발과 판매시설 설치
3. 지역특성을 반영한 축제·행사·문화공연, 문화환경의 조성 및 홍보

개정안에 따른 ‘전통시장 등에서 개최하는 중고품 매매·교환 또는 예술품 전시·판매 등 지역사회, 문화, 관광에 관한 공동사업’과 현행법에 따른 ‘문화관광형시장’은 지역의 문화·관광자원 등을 활용하여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 및 매출 증대 효과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음.

다만, 현행법에 따른 ‘문화관광형시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²⁾ 지정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데 비해, 개정안에 따른 공동사업은 전통시장 등의 상인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보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바,

개정안에 따라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전통시장 등에서 지역사회·문화·관광에 관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상인을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의 문화·소통 기능을 강화하고 시장에서의 중고품 및 예술품 거래를 장려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지역 고유의 특징점을 살려 전통시장의 경쟁

4. 시장·상점가와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상품 및 문화·관광 콘텐츠의 개발과 홍보

5. 문화관광형시장의 상인 및 상인조직에 대한 교육

6. 그 밖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④ 문화관광형시장의 신청절차, 지정대상 및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2) 이 경우 시·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65